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'직접생산확인기준' 관련 안내

가. 직접생산확인기준 관련 사항

- 1) 관련근거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
- 2) 직접생산의미 : **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른 생산시설을 모두 구비한 채 필수공정에 관한 한 이를 '전부', '직접' 수행하여 생산하는 것을 의미 (서울고법 판결)**
- 3) 직접생산확인 : 생산공장, 생산시설, 생산인원, 생산공정(필수공정) 여부 확인
***필수공정 : 선각공사→의장공사→기관공사→진수 및 시운전(검사)**
- 4) 유효기간 :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
- 5) 세부품명 : 기중기선 / 어선, 예인선, 바지선, 자동차도선, 여객선, 병원선, 벌크화물선, 소형보트, 기동정 / 소방선, 구조선 / 순시선, 경비선, 오염관리선 / 세관감시선, 어업실습선, 어업조사선, 어업지도선, 청소선, 해양조사선 / 잔교 (총6개제품, 22품목, 2025~2027년)
***단, 병원선, 벌크화물선은 2025년 상반기중 직생 세부품명 추가 고시 예정(중기부)**
- 6) 세부품명신청 : 조합에서 매3년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세부품목) 신청/지정·고시

나. 직접생산확인 기준 관련 위반사항 제재 안내

- 1)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, 하청생산·완제품에 대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납품
⇒ 직접생산 모든제품 취소[과징금해당, 신청제한 1년(하청생산은 6개월 취소)]
*하청생산납품을 하였다는 것은 곧 그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되는 필수공정마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(헌법재판소2018.11.29선고 결정)
- 2) 생산설비의 임대, 매각, 생산인원 축소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기준 미충족
⇒ 미충족 발생후 경쟁입찰참여 또는 30일 이내 증명서 미반납시 신청해당제품 취소(6개월 제한)
- 3) 직접생산 확인받은 생산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 생산시 등
⇒(예) A사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증명서 발급후 지점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납품 : 모든 품목취소 및 6개월간 제한
- 4) 그 외 위반사례
 -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시
⇒ 서울행정법원 2018.04.26 선고
 - 타사에서 필수공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
⇒ 서울행정법원 2013.12.24. 선고 판결